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납세자 권익 보호...국선대리인 신청, 5억원 이하 영세법인까지 확대

납세자 권익 보호 목적으로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은 기존 개인에서 자산이 5억원 이하 영세법인까지 늘린다.

개정안은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개인에 한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은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다.

국선대리인 청구세액은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는 현행 3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상향된 금액이다.

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가 확대된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 등이 상향조정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이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보장성보험 해약과 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의 대상도 추가된다. 기업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등 100%) 범위에서 공제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추가... 자연재해도 포함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퇴직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폐업이나 사망, 대표자 지위 상실 등 사유에 해당할 때 퇴직소득에서 과세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연·사회 재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 선고 시에도 퇴직소득에서 과세가 이뤄진다.

또한 정부는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 대상에 ‘소상공

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용지받은 자도 추가한다.

해당 제도는 재창업자금 용자를 받은 매출 15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 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년) 등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정망 강화 차원에서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킨다.

‘주담대’ 이자부담 낮춘다... 대상 주택 5억~6억원 조정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 차원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물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선도 높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한 요건이 완화된다.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하면, 똑같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인터넷 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번과 같이 개선된다.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후속 시행령 혜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